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10

제출년월일 : 2014. 4. 9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창업보육센터로의 지정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

○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2013. 12. 31.자)로 운영방법을 검토한 결과 경기테크노파크에 업무이관을 결정함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근거 마련

☐ 주요내용

가. 『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3조 제8호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에 따라 "창업보육센터" 정의 추가 및 제4조에 "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" 업무 추가

나. 제5조 운영방법에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☐ 개정 조례안 : 붙임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☐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4. 3. 7. ~ 2014. 3. 27. (20일간)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호 중 "이라 함은" 을 "이란" 으로 하고 "유통하는데 관하여" 를 "유통하는 과정에서" 로 하며,
같은 조 제2호 중 "라 함은" 을 "이란" 으로 하고, "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" 을 "제2조제1호에 따라" 로 하며,
같은 조 제3호 중 "이라 함은" 을 "이란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이라 함은" 을 "이란" 으로 하며,
같은 조 제5호 중 "라 함은" 을 "란" 으로 하고, "안산시" 를 "안산시(이하 "시" 라 한다)" 로 하며,
같은 조 제6호 중 "이라 함은" 을 "이란" 으로 하고,
같은 조 제7호 중 "라 함은" 을 "란" 으로 하고, "당해" 를 "해당" 으로 하며,
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"창업보육센터" 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라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·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
제4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
6. 그 밖에 정보기술·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의 제목 "위탁운영" 을 "운영방법" 으로 하고, 제1항 중 "시장" 을 "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" 으로, "센터의 시설·장비의" 를 "센터 업무의" 로 하며, "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위탁하는 때에는" 을 "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,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.

② 제1항의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를 준용한다.

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시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 제7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10조 제4항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비즈니스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및 정보기술 기업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"자체 심사한 후 관련서류(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)"를 "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서류(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, 위원회 심사결정서 등)"으로 하고, "득해야"를 "얻어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"센터의 소장"을 "센터소장"으로, "없는 한"을 "없을 때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한다.

제15조 제2항 중 "허위로"를 "거짓으로"로 한다.

제16조 제1항 중 "사항의 변경"을 "변경사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같은 조 제2항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장"을 "센터소장"으로 하며, "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"를 "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"로 한다.

제18조 제1항 중 "대하여는 당해"를 "대해서는 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한하여"를 "한정하여"로 한다.

제19조 제1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0조 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센터소장” 으로, “거쳐” 를 “거치고 시장의 승인을얻어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1조 제2항 중 “필요한 때” 를 “필요한 경우” 로 한다.

제22조 제1항 중 “대하여는” 을 각각 “대해서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소장이” 을 “센터소장이” 로 한다.

제24조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주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주한 업체의 입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이 조례 제17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주 신청한 업체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산업정책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산업정책과장 최 종 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과학기술지원계장 조 한 용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권 영 관 (행정296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(생략) 1. "정보기술산업" 이라 함은 정보를 생성·저장·유통하는데 관하여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.	제3조(정의)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이란-------- --------유통하는 과정에서--- ----------
2. "소프트웨어산업" 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및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	2. ----------이란----- ---------- 제2조제1호에 따라--- ----------
3. "창업지원사업" 이라 함은 정보기술·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이용 및 시장성, 경영, 기술, 세무에 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3. ----------이란----- ----------
4. "비즈니스지원사업" 이라 함은 창업지원실 졸업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화단계에 있는 유망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비·시설 등의 지원과 경영지원, 마케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4. ----------이란--- ----------
5. "입주자" 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창업·비즈니스 지원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.	5. --------란---------- ---안산시(이하 "시" 라 한다)-- ----------

6. “졸업” 이라 함은 입주자의 입주계약 만료 및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.	6. --------이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7. “퇴거” 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운영·관리규칙 위반 등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당해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.	7. ------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해당 ---------- ----------.
〈신 설〉	8. “창업보육센터” 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·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제4조(사업) (생 략) 1. ~ 4. (생 략)	제4조(사업)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5.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
5. 기타 정보기술·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	6. 그 밖에 정보기술·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시설·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위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방법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------센터 업무의 -------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,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안산시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----------.
②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의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.	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시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④ <삭 제>
제8조 (생 략) 1.~6. (생 략)	제8조 (현행과 같음) 1.~6. (현행과 같음)
7.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	7. 그 밖에 ----------
제9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·검사할 수 있다.	제9조(지도감독) ① ----------그 밖의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운영위원회)①~③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④ ---------- 한 차례만----------. --,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입주대상 및 자격) ① 창업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정보기술·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,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	제12조(입주대상 및 자격) ① ---------- 3년 ----------.

② 비즈니스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및 정보기술 기업 2.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 입주시킬 수 있다. 3.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	② 비즈니스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및 정보기술 기업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③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	③ 그 밖에 ----------
제13조(입주신청) ① (생 략)	제13조(입주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센터소장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자체 심사한 후 관련서류(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.	② ----------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서류(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, 위원회 심사결정서 등)-------- 얻어야 ---.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센터소장에게 통보한다.	<삭 제>
제14조(입주승인 및 계약체결) ① 센터의 소장은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.	제14조(입주승인 및 계약체결) ① 센터소장---------- 없을 때에는 ----------.
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-----한 차례만 ----------. ----------.
제15조(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) ① (생 략)	제15조(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거짓으로----------.
제16조(변경사항 통보)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6조(변경사항 통보) ① ----------변경사항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	4. 그 밖에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입주기간 및 입주연장)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지원실의 입주기간을 합산한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7조(입주기간 및 입주연장)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,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3개월----------.
③ 시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③ 센터소장----------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----------.
제18조(시설 사용료) ① 센터 입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평정가액에 대해서 창업지원실은 1000분의 30, 비즈니스지원실은 1000분의 50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분담한다.	제18조(시설 사용료) ① ----------대해서는 해당 ----------.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센터의 시설 중 정보검색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장은 입주자와 단체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사용목적이 센터 설치 목적에 합당한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한정하여----------.
제19조(졸업) ① (생 략) 1.·2. (생 략)	제19조(졸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	3. 그 밖에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퇴거)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.	제20조(퇴거) ① ----------센터소장----------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5. 그 밖에 ----------
제21조(공동시설 및 개발장비의 사용) ① (생 략)	제21조(공동시설 및 개발장비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중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 필요한 경우----------.
제22조(장비의 관리) ① 센터소장은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의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	제22조(장비의 관리) ① ----------대해서는----------대해서는----------.

② 노후 ·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『안산시 물품관리 조례』를 준용하여 처리한다.	② ---------- 그 밖의 ---------- .
제23조(장비의 반출금지) 센터에 설비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. 다만,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다.	제23조(장비의 반출금지) ---------- . --- 센터소장이---------- .
제24조(사용자 준수사항) (생 략)	제24조(사용자 준수사항)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위험물 반입을 할 수 없다.	4. 그 밖에 ---------- .